#### 학기제 현장실습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공업대학교 학칙 제22조 제3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에 규정된 현장실습 중 학기제현장실습(이하 "학기제")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장실습의 구분 및 운영기준) ① 학기제는 졸업학기에 15주 과정과 8주 과정으로 구분한다.

- ② 학기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  - 1. 15주 과정 : 1주간은 출석수업, 14주간은 산업체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.
  - 2. 8주 과정: 7주간은 출석수업, 8주간은 산업체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.
- ③ 학기제 교육생의 산업체현장 교육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과정별로 다음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1. 15주 과정 : 500시간 이상
  - 2. 8주 과정 : 300시간 이상
- ④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대학과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6.10.01.>

제3조(참여자격) ① 졸업 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자

- ② 졸업학년 1학기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, 졸업이 가능한 자
  - 1. 2년제 : 60학점 이상
  - 2. 3년제 : 100학점 이상
- ③ 지도교수가 관련 분야 직무능력(대외수상)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을 받은 자
- ④ <삭제 2016.10.01.>

제4조(이수신청서 제출) ① 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현장실습 이수신청서<별지 1호 서식> 및 학기제 현장실습 산업체 일반현황<별지 2호 서식>을 지도교수, 계열(학과)장을 경유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.

제5조(학점인정) ① 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당해학기 신청 학점 전부를 교과목 별로 인정한다.

- ② 학기제 학점인정 신청은 학기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계열(학과)의 계열(학과)장이 학기제 현장실습 학점인정원<별지 7호 서식>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계열(학과)에서 제출한 학점인정원을 취합, 확인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6.10.01.>
- ④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그 결과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.
- ⑤ 과목 담당교수는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산출하며 학기제 현장실습종합평가서(별지 8호 서식)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한다.



**제6조(실습기관)** 학기제 실습기관은 계열(학과)별로 현장실습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실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다.

- 1. 총장과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기관
- 2. 실습기관 지정요청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기관
- 3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의 사업장
- 4.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험장 또는 연구소와 국가보조를 받은 시험장 또는 연구소
- 5. 산학협동 규정에 의한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한 업체
- 6.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, 설비, 후생복지 등이 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실습기관

**제7조(실습기관 인정)** 제6조 각호에 준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계열(학과)장의 허가를 득하면 학기제 실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8조(실습기관 변경) 학기제에 참여중인 학생 또는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학기 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제 현장실습 실습기관 변경신청서<별지 3호 서식> 및 현장실습 이수신청서<별지 1호 서식>, 학기제 현장실습 산업체 일반현황<별지 2호 서식>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 승인된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.

제9조(중도포기 및 특별이수인정) ① 학기제에 참여중인 학생이 산업체의 약정내용 불이행 및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 이상 현장실습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5주(15주 과정) 또는 2주(8주 과정)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 교육중도 포기서<별지 9호 서식>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잔여기간은 학교학기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학기제 기간의 1/2선 이상이 경과된 후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실습기관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학기제 기간의 4/5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실습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계열(학과)장의 현장실습 변경 및 유보 허가원을 받아 각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한한다.
  - 1. 대학의 공식행사,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
  - 2.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
  - 3.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
  - 4. 질병,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
  - 5. 기타 계열(학과)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참여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경우

제10조(실습 및 평가) ① 계열(학과)장은 실습업체와 실습기간, 실습부서, 실습내용 및 기타 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계열(학과)장은 학기제 신청학생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실습업체에 파견하여야 한다.
- ③ 실습 학생은 실습일지에 실습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

- ④ 학기제를 이수하는 학생은 학기제 종료 후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<별지 4호 서식> 및 실습일지를 계열(학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계열(학과)장은 실습 학생이 제출한 실습일지와 결과보고서, 실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현장 관리자 교육생 평가서<별지 5호 서식> 및 지도교수의 학기제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<별지 6호 서식>를 바탕으로 학기제 현장실습 학점인정원<별지 7호 서식>과 학기제 현장실습 종합 평가서<별지 8호 서식>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습지도) ① 학기제 참가 학생지도를 위하여 실습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실습지도 교수는 학기에 3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, 출근부 등을 점검하고 실습기관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실습지도 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성적처리) ① 학기제는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.

② 각 과정별 참가학생의 성적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과정	성적반영 비율
15주 과정	·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30%(지도교수 평가) ·현장관리자 교육생평가서 30% ·과목별 학습수행평가(과제포함) 20% ·지도교수 순회지도보고서 20%
8주 과정	·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20%(지도교수 평가) ·현장관리자 교육생평가서 20% ·과목별 학습수행평가(과제포함) 20% ·지도교수 순회지도보고서 20% ·중간고사 20%

**제13조(관계서류보관)** 학생 현장실습 교육에 관계되는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 6.10.01.>

제14조(기타준용)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, 대학 규정에 준하되 학칙, 학사내규, 대학 규정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09.01.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.10.01.부터 시행한다.

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.09.01.부터 시행한다.



#### <별지 1호 서식>

				지도교수	계열(학과)장
	현장실습 이수신청	서			
계열(학과)		학 년		이수신청학기	
학 번		성 명			
실 습 구 분	□ 계절제 학기제 (□ 15주, □ 8주)	신청학점			학점
	실	습 대상 기관			
실습기관명		실습부서명			
실습 담당자		부서연락처			
실 습 기 간	20 년 월	일 ~ 20	년 월	일(총 시간)	

#### 【유의사항】

- ① 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당해학기 신청학점 전부를 교과목 별로 인정한다.
- ② 실습일지, 결과보고서는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본은 불가합니다.

#### 【서 약 서】

본인은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,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- □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대학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.
  - 2. 실습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  - 3. 현장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4. 현장실습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대학에 연락하여야 한다.
- □ 다음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1. 현장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자
  - 2.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
  - 3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상기와 같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

<별지 2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

## 학기제 현장실습 산업체 일반현황

회 사 명	(법인, 기	H인)				대표자		
사 업 자 등록번호						설 립 일		
소 재 지	본사					전 화 FAX	)	-
포 세 시	공장					전 화 FAX	)	-
홈페이지 주소	http://					전자우편 (E-mail)		
실습생 관리 담당 부서	직위 성명					· 전 화	)	-
업종			<u>付</u> 기전자( ), 정보 하학( ), 섬유( ),					
주요 생산품목 (2품목)	1)				2)			
인원 현황 (명)	임 :	원	기술직 (연구직포함)	사무직		기능직	기 타	계
(0)								

공장위치 약도 및 기타 사항



<별지 3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#### 학기제 현장실습 실습기관 변경신청서

-1	담 당	과 장	센터장
결			
재			

계열(학과)		학 번		
성 명		연락처		
종 전 실습기관	실습기간		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변 경 실습기관	실습기간		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변경신청 사 유				

위와 같은 사유로 실습기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현장실습생: (서명 또는 인)

학 과 장: (서명 또는 인)



<별지 4호 서식>

#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

계열(학과)			학 번			성 명			(서명 또는 인)		
연락처			실습기관								
실습기긴	+		년	월	일 ~	년	월	일 (	주)		
		·	l 습 내 용(	자신이	] 담당한 역	업무 중심	)				
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것(실습 전 및 실습 후 차이점 등)											
		ą	변장실 <del>습을</del> 부	통해 그	=낀 점 및	건의사항					
			나의 미래	비전(	현재 준비혈	할 사항)					

20 년 월 일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

<별지 5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

## 현장관리자 교육생 평가서

계열(학과)		학 번		성 명			
실습기관			실습기관 연락처	Tel) Fax)			
실습기간	년	월 일	[~ 년	월	일 (	주	-)
	평 가 형		만점	평가 점수	비고		
실습시의 태도	(실습에 대한 성실성)		3				
새로운 실습상	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	력			3		
현재 실시하고	있는 실습내용에 대한	지식과 기술	울정도		3		
용모, 복장 언	행의 단정성				3		
협동심 (조직원	년 및 실습생의 원만한 인	[간관계)			3		
자발적이며 창	의적인 활동성				3		
실습기간중의	근면성 (출·퇴근 상황 포	함)			3		
자기가 맡은 일	일에 대한 책임감과 독자	적으로 수	행할 수 있는 능	· 력	3		
실습 중 혹은	각종 기자재의 관리철저	와 실습장을	을 정리 정돈하	는 태도	3		
작업 및 실습능	등력 (작업의 신속성, 정회	학성)			3		
	계				30		

위와 같이 학기제현장실습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실습기관 :

평가자직위 :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

<별지 6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

### 학기제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

( 🗆 15주 🗆 8주 )

실습기관										
실습기관 주소										
계열(학과)명										
학번							학년			
성명										
소청가드이기	1차 :	년	월	일		2차 :	년	월	일	
순회지도일자	3차 :	년	월	일		4차 :	년	월	일	
실 습 평 가 항 목										
	실 습 평 기	가 항 목	<u>!</u>			만 점	평가건	점수	비	고
실습사항의 숙지		가 항 목 	<u>.</u>			만 점 4	평가	점수	비	고
실습사항의 숙지 실습적응 정도 및	정도	가 항 목 	ī				평가	점수	비	고
	정도	가 항 목 	Ī			4	평가전	점수	비	고
실습적응 정도 및	정도 ! 창의력  실성, 근면성	가 항 목	<u> </u>			4	평가	점수	別	<u>ਹ</u>
실습적응 정도 및 실습에 임하는 성	정도 ! 창의력  실성, 근면성  정도	가 항 목	Ī			4 4 4	평가	점수	削	J.

상기와 같이 학생 현장실습 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실습지도교수 : (서명 또는 인)



<별지 7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

		담 당	과 장	센 터 장	총 장
학기제 현장실습	결				
학점인정원	재				
		•	•	•	

계열/			학년	학번	
전	고		ㅋ근	ㅋ근	
정	명	생년월일			
연 릭	낚 처				

본인은 학기제현장실습으로 201 학년도 ( )학기 학점인정원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점신청인정 과목											
교 과 목 명	이수구분	학점	비고	교 과 목 명	이수구분	학점	비고				

년 월 일

본 인 (서명 또는 인)

계열장/학과장 (서명 또는 인)



<별지 8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

### 학기제 현장실습 종합 평가서

( 학년도 제 학기)

			평 가						
학번	성명	기관(업체)명	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(지도교수 평가)	현장 관리자 교육생 평가서	과목별 학습수행평가 (과제 포함)	지도교수 순회지도보 고서	중간 고사	종합 평가	비고

위와 같이 평가 함.

201 년 월 일

소속학과 : 과(전공)

지도교수: (인)

계열(학과)장: (인)



<별지 9호 서식> <개정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## 학기제 현장실습 교육중도 포기서

	담	낭	과	장	센 터 장
결 재					
재					

계열(학과)			학	번					
성 명			연	락처					
실습기관		실습기간			•	대표자		(서명	녕 또는 인)
교육 중도포기 사 유									
C	리와 같은 사유로	! 교육 중도	포기를	신청하	오니	허락하여	주시기	바랍니다.	
		20	년	월		일			

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

현장실습생 :



(서명 또는 인)

<별지 10호 서식> <신설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		핰	기제 실	급기	]관 7	디정	신청	서	
섭외	계열/	/학과				0]	름		
교수	직	위				연락	<b>낙</b> 처		
실습기관명						대표	.자명		
업 종		종				소찌	대지		
실습 기관	사업자등	등록번호			-			_	
정보	실무단	감당자				부셔	너명		
	연락처	사무실				직	위		
	E 711	휴대폰				종업*	원 수		
	실습가	능전공				현장 수용	·실습 .이위		
			능력단위			То	<u>'</u> '		
	실습내용								
합의	합의 내역 실습일정								
네억									
	현장실습지원비			지급			금액	(₩	원)
	지급여부			미지급			* 서식 원비		] : 현장실습지 등의서 제출
위와 같	이 실습기	기관 지정	신청서를 저	]출합니다	<b>ᅷ</b> .				
				년	월	일			
계열/학과명:						담당교	-수:		(서명)
						학 과	장:		(서명)
대구공	<sup>2</sup> 업대학	·교 현장	앙실습지원	센터장	귀하				



<별지 11호 서식> <신설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	학기	제	현건	앙실	습	춙	計o	여 신	<u>]</u> ਨੋ	청	₹( <sup>/</sup>	실습기	관용	.)
-1-1	기관명							Ľ	田ノ	다명				
신청 기관	주업종							사업	자등	록번	호			
/1년	주 소													
	성 명								직	귀				
기술	부서명								휴대	폰				
지도 위원	전화번호								FA	Χ				
	E-mail													
	실습기간	20	년	월	일	~	20	년	월	]	일	실습일수	(	)일
요청	실습전공											실습인원		9日
사항	대상학년											결합인전		<b>o</b>
	자격요건													
실습내용														
실	습요일													
실	습시간				주	5일	!(월	~ 금)	09:	00 -	~ 18	:00 (8시간)		
현장식	J습지원비 -	지급									- 1	금액 (₩		원)
지급여부 미지급 □							* 서식 18호 서식 : 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동의서 제출							
본 기	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
첨부:	첨부: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.													
					20	١	년	월		일				
기관명 신청인(대표) (서명)										(서명)				
대구-	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													



<별지 12호 서식> <신설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	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(학생용)									
,	성 명		계열,	/학과						
7	생년월일				학	번				
	주 소									
C	면 락 처				자	-택				
	실습업체명									
실습 기관	주소				담당지	<b>ት</b> 성명				
	사무실				휴대	휴대전화				
실습기간		20	년	월	일 ~	20	년	월	일(	)일
현장실습지원비 지원여부		□ 지급(			)원				미지급	
본분을 해보현	기 본인은 상기을 지키고 제반 험법상의 책임 실습을 신청합!	반규정을 준수 을 제외한 일	하며,	실습기간	중 본인	<u>l</u> 의 부 <sup>2</sup>	주의로	인한	사고에 [	대해서는 재
20 년 월 일 신청인:									(서명)	
대구	공업대학교	. 현장실습	지원석	센터장 ·	귀하					



<별지 13호 서식> <신설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### 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동의서

1. 현장실습 기관( 실습수업 기관명 기재 )

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, 취업 기회 확대 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장실습수업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:

20 년 월 일

실습수업기관명

대표자

(인)

2. 학생

본인은 전공과 관련된 실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, 취업 사전교육을 지원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실습지원을 받으므로 현장실습수업 지원비를 지급받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계열	학번				
성명	(서명)				

3. 계열/학과

현장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장실습지원기 관으로 선정하고 현장실습실시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
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기관에 대한 선정 사유:

20 년 월 일

계열/학과 지도교수: (서명 또는 인)

학 과 장: (서명 또는 인)



<별지 14호 서식> <신설 2016.10.01.><개정 2017.09.01.>

### 학기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제1조(목적) 이 현장실습 협약서는 <u>회 사 명</u>대표(이하 "갑")와 대구공업대학교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"을"소속 재학생(이하 "실습생"이라 한다) <u>현장실습생 성 명</u>(이하 "을")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, 상호간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)

-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계절제(방학기간 중 실시)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/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, 최소 4주(160시간)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.

#### 제3조("갑"의 현장실습 운영)

- ① "갑"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.
- ② "갑"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③ "갑"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.

#### 제4조("을"의 현장실습 운영)

- ① "을"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.
- ③ "을"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.
  - 1.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.
  - 2.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"갑"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
  - 3.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- 4.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"갑"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④ "을"은 현장실습 중 "갑"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"갑"과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⑤ "을"은 "을"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"갑"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.

제5조(실습기간 및 시간과 장소) 실습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① 실습 시간은 "갑"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사전에 연장(최대 5시간/주)·야간·휴일 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실습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관 및 실습생의 동의하에 연장·야간·휴일에 실시할 수 있다. ② 실습 장소는 "갑"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, 실습생의 보건•위생 및 산업재해 등



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"갑"과 "을"이 협의한다.

**제6조 (현장실습지원비)** 실습기관"갑"은 실습생"을"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하며 해당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해당 대학과 학생의(서면) 동의서가 있는 경우 '예외'로 인정하여,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 (지도교수 지정) "갑"과 "을"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지도 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**제8조(산업안전보호)** 실습기관은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제9조(보험가입) 본교는 실습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실습생을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성희롱예방)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.

제11조(복리후생 지원)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없이 식당, 휴게실, 의무실, 기숙사,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
제12조(수료증명서) "갑"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"을"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현장실습 참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.

제13조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**제14조(준용)**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일경험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」에 따른다. 다만, 고등교육법, 직업교육훈련촉진법,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"갑" "을"

사업체명: 기관명: 대구공업대학교

주 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

대 표 자: (서명) 대표자: 총 장 이 별 나 (인)

